

#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 한국어항협회 特殊法人 전환 조직·자산 등 권리의무 승계

### 2월23일 總會서 의결

## 기능역할 더욱 중요 회원 합심 성과 거양

### 孫회장, 협회운영 내실화 다짐

한국어항협회는 2월 23일 오전 11시 건실회관 3층에서 이희수 수산청 1장을 비롯, 내외 귀빈과



한국어항협회 특수법인 전환 총회가 2월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MBC 판소리 탈린트 김중엽씨를 초청, 특별 축하행사를 가졌다.

## 특수법인인출범 큰 성과 회원 공동 참여도 기대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李義秀 수산청장  
총회 치사

이희수 수산청장은 2월 23일 오전 11시 건실회관 3층에서 열린 한국어항협회 특수법인 전환 총회에서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은 2월 23일 오전 11시 건실회관 3층에서 열린 한국어항협회 특수법인 전환 총회에서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은 2월 23일 오전 11시 건실회관 3층에서 열린 한국어항협회 특수법인 전환 총회에서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 어항을 漁村 定住의 핵으로 理想 어항 건설에 매진토록

이희수 수산청장은 2월 23일 오전 11시 건실회관 3층에서 열린 한국어항협회 특수법인 전환 총회에서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

## 農特稅 2조5천억 유치

수산청은 UR협상과 관련해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어항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청, 어항시설 등 소요예산으로

수산청은 어항시설 등 소요예산으로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어항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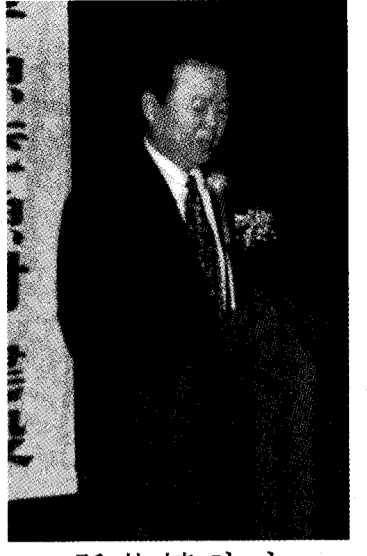
## 孫井植 회장 또 1천만원 協會 발전기금으로 기탁

孫井植 회장은 2월 14일 1천만 원을 한국어항협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이는 협회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면에서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에서 30년째 통행  
이제, 이 땅에서 부활하는  
건설경제를 구원하겠습니다. 저  
희 건설경제의 새 르네상스의 미로가  
떠오르나 않을까요? 라고 다짐  
하고 있는 것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  
구 바와 같이 UIC협상의 타결  
을 희망이나 수산분야 뿐 아  
라 건설시장은 그 예외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회원·협회 노약의 기회 기능 역할 증대 시킬 터”



회장 孫井植  
총회 인사 말씀

이제는 국내 건설업도 국제적  
으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  
으므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 노약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현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항건설 기술수준의  
향상을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  
이제, 국내 건설업도 국제적  
으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  
으므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 노약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현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항건설 기술수준의  
향상을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

## 어항개발 위한 기술발전 조사연구활동 강화하기로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발전  
조사연구활동 강화하기로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발전  
조사연구활동 강화하기로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분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  
조되고 있다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어항에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복지어항으로 건설하  
기 위해서는 어항의 기반시설  
에 게 중점을 두어 말해주고 있습  
니다.

## “학내외가 함께 하는 ‘영소연’ 협회” 출범 어항문화 창달의 도이바지 어항인공공동의 증진 최선

어항문화 창달의 도이바지  
어항인공공동의 증진 최선  
어항문화 창달의 도이바지  
어항인공공동의 증진 최선

새로운 어항문화의 창달과 신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에  
다할 것이므로 민중의 인식제 양  
바입니다.  
따라서, 한민어항협회의 무공  
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  
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처하지 못하면 그대로 도태되  
고 맙니다.  
이제, 학내외가 함께 하고 기  
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이기지  
않고서, 노약건설업계를 구원하  
는 노약건설업계의 새 르네상스의  
미로가 떠오르나 않을까요?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임 매우 고무적  
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수 수산부장  
대통령령 제 14111호  
1994. 2. 25. 공포  
어항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현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항건설 기술수준의  
향상을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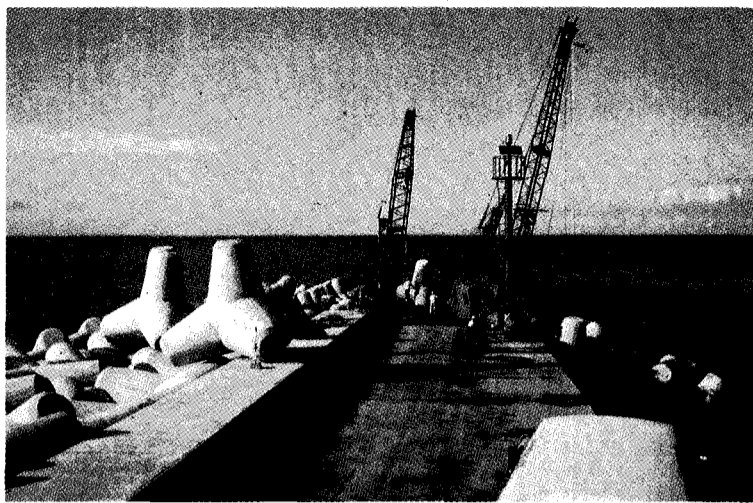
어항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현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항건설 기술수준의  
향상을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

어항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현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항건설 기술수준의  
향상을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

어항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현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항건설 기술수준의  
향상을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

# 새로 8개항에 어항 시설

## 1천 2백억원 투입 연내로 공사예 착수



수산청은 총공사비 1,201억원을 투입, 초도항 등 8개 어항을 개발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올해부터 총공사비 1천2백10억원을 투입, 초도항 등 8개 어항을 개발할 방침이다. 수산청의 따르면 어항 대피시설 확충 및 선박접안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초도항을 비롯해 삼덕, 매물도, 울도, 광안, 풍남, 득남, 전정포항 등 8개항에 울투터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시설을 새로 건설할 예정이다.

### 공사예 환경영양방역 시설

## 발주자 예산 반영해야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반드시 환경영양방역대책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해야 하며 시공자는 환경영양방역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하는 등 공공시설공사에 대한 환경영양방역 대책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이 지난 2월 1일 이같이 내용의 주요골

### 농어촌 생활권 개발키로 1조 1천 6백억원 들여

정부는 올해 총 1조 1천 6백16억원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에 농어촌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의 농어촌개발사업은 사업별로 투자자가 분담해 투자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정부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부담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민자 유치 촉진법안 제정 등을 통해 민자 유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민자 유치 촉진법안 내 용가운데 일부를 수정,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 1개항당 평균 2억 4천 투자

제2종항 건설, 소규모항도 2백 16곳 개발

올해 시도지사관리 제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1개항당 평균 2억 4천 투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개항당 평균 2억 4천 투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개항당 평균 2억 4천 투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축행정 개혁

### 건축법 개정 행정 간소화

건설부(건설)는 연말까지 건축법(전면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전면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전면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전면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합동법인 50% 미만 출자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된 민자유치 촉진법안 내 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 韓國漁港協會 特殊法人 轉換을 祝賀합니다

- 光南開發 株式會社
- 金光企業 株式會社
- 南進建設 株式會社
- 南和土建 株式會社
- 合資會社 大韓土建
- 東光建設 株式會社
- 東和建設 株式會社
- 株式會社 三建
- 三扶土建 株式會社
- 株式會社 三羊
- 三梧綜合建 株式會社
- 株式會社 長建
- 盛寶建設 株式會社
- 株式會社 長建
- 世紀建設 株式會社
- 信友建設 株式會社
- 新豐建設 株式會社
- 永生建設 株式會社
- 株式會社 宇洲綜合建
- 林光土建 株式會社
- 正韓綜合建 株式會社
- 朝興工營 株式會社

# 漁港計劃樹立의要領

(54)

冷凍 冷蔵施設 用地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 가량이 불면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다. 이처럼 노년기 불면증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효율이 저하된다. 노년기의 수면장애는 나이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즉 통풍이나 불편감을 주는 내과적 질환으로 관절염, 비뇨기계질환, 심이성 장애, 현훈 등이 있으며 신경계, 특히 정신과적인 원인으로 노년기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잠을 이루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노면이 되지만 자주 잠을 깨게 되고 오히려 수면의 내용을

③ 회전수는 어항의 입지조건, 성격, 어업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표준적으로는 2~3가지 예가 많다. <그림2>는 주요어업 생산지에 있어서 냉장고의 계획과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계획 회전수로서는 3을 택하고 있으나 실적의 연간 평균회전수는 최저 1.1에서 최고 3.9로 분산되어 있으며 평균 2.3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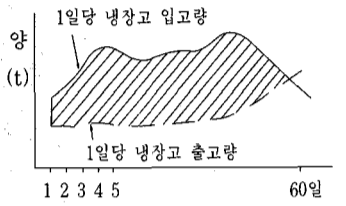
이상의 순서를 거쳐 냉장고 규모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text{냉장고 규모(톤)} = \frac{\text{냉장고용 출하량(톤/년)}}{\text{회전수(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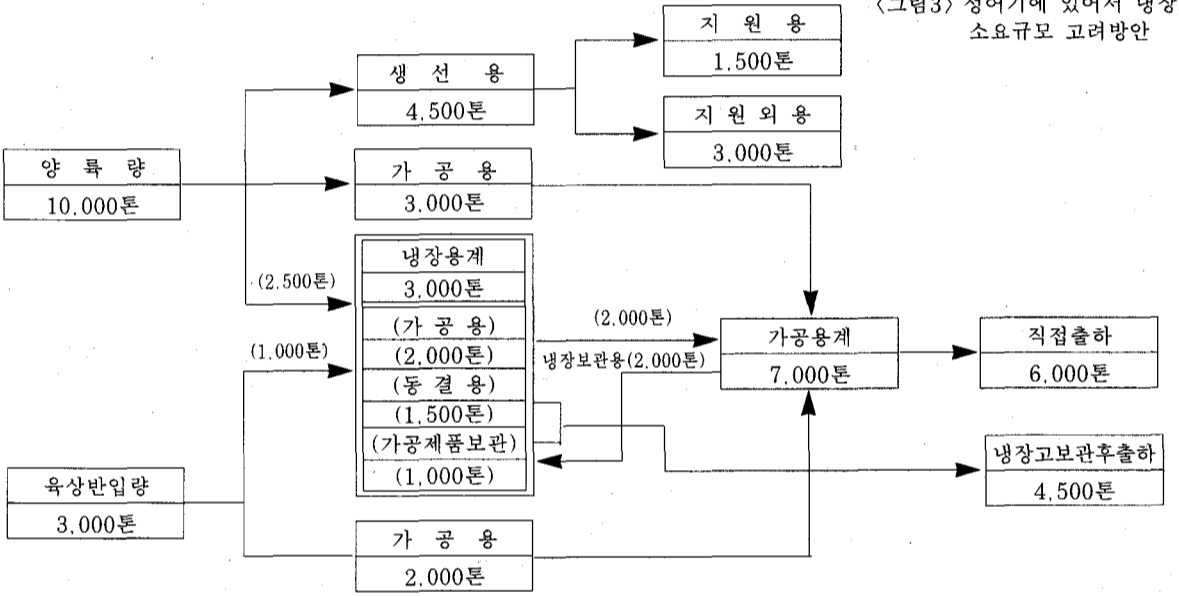
그러나 양륙이 일시에 대량으로 집중되는 어항에 있어서는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 규모로는 부족할 우려가 있다. 최성기(1~2개월)의 양륙량을 대상으로 이용 배분율을 검토하여 그 율에 따라 냉장고 수용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 냉장고용 출하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냉장고의 규모로 정하기 위해서는 <그림3>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림3>에서 사선 부분은 성어기의 일별 소유보관량이지만 성어기에 들어가기 전 기수용량이 있으므로 이것을 더한 수치가 냉장고의 소유규모가 된다.

이와같이 대량의 양륙이 집중하는 때는 어가의 저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용량이 큰 냉장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성어기 이외의 시기에는 시설의 대부분이 유희상태로 되어 수익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타당한 시설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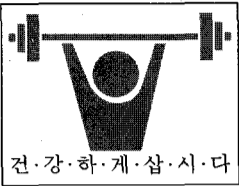
<그림3> 성어기에 있어서 냉장고 소유규모 고려방안



<그림2> 이용배분예

## 노년기 불면증

커피 콜라 초콜릿 등 자극성 음식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 가량이 불면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다. 이처럼 노년기 불면증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효율이 저하된다. 노년기의 수면장애는 나이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즉 통풍이나 불편감을 주는 내과적 질환으로 관절염, 비뇨기계질환, 심이성 장애, 현훈 등이 있으며 신경계, 특히 정신과적인 원인으로 노년기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잠을 이루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노면이 되지만 자주 잠을 깨게 되고 오히려 수면의 내용을

면에서는 불면증을 초래한다. 그 외에 여러 약제들이 수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잠자는 방의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방이 지나치게 춥다든지, 덥다든지, 혹은 시끄러운 경우 노년의 수면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불면으로 시달리는 많은 노인들이 특별한 해결책 없이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노년기의 불면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환경적 요인인 불면증의 원인을 식별해야 한다. 또한 수면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고 커피 콜라 차 초콜릿 등 자극성을 피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또 잠자는 방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독서라든가 취미활동,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잠자리에는 가능한 T·V 라 등 음식물 등을 두지 않도록 하며 방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시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분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가볍게 걷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면 도움이 된다. 가능한 낮잠을 피하도록 하며, 잠들기 전 수면의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수면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보고, 그래도 계속 수면에 대해 불편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있도록 가족을 이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납세의무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와 도입배경

가. 토지초과이득세란 유효토지 등의 가액이 그 소유자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다른 지역보다 초과하여 상승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과세하는 직접세의 일종이다.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배경

지가상승으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유효토지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과세대상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효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 이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효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 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된다.

유유토지 등의 적용기준과 세액계산 방법

가. 유효토지 등의 적용기준

유효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세액계산방법

과세표준 =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

세액 = 과세표준 × 50%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6년 이내 양도시에는 그 기간에 따라 40-80% 세액 공제 (다만, 필요경비 공제선 택시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전액비용 공제로 같음)

납세의무자

가. 토지의 소유자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유효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나. 매수계약자 등

유유토지 등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유토지 등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기간중에 유효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부담 신고서를 후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년도 8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에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각 소유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 납세의무자 신고와 납세의무자 통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납

세의무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년도 8월 25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라.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이행치 않고 출국코자 할 때 또는 일정한 장소에 거주치 않는 때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과세기간 및 납세지

가. 과세기간

정상과세기간(3년단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그 개시년도의 1월 1일부터 그 종료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예정과세기간(1년단위)

국세청장이 지가급증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유효토지 등에 대하여 1년간을 예정과세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다.

나. 납세지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마다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동일인(하나의 법인)이 연결한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동일용도에 일괄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필지로 본다.

위의 하나의 필지로 보는 경우로서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소관 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이 그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관할 세무서로 납세지를 지정하게 되며, 그 토지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년도 8.25까지 소관 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 稅務안내

## 稅務안내